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5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 : 박상혁·김윤덕·김정호

허 영・송옥주・윤후덕

최인호 · 서삼석 · 이정문

서영석 • 김승원 • 임종성

진성준 • 한병도 의원

(1491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첨단·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·개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.

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체계적 대응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제조화 관련 연구·개발 사업은 정부출 연연구기관, 성능시험대행자,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 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상 국제기준 제 · 개정 상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

국외사무소 운영 업무 등 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의4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4의 제목 "(전담기관의 지정)"을 "(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·개발 업무
- 2.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·분석 업무
- 3.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
- 4.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・교류 및 국외사무소 운영
- 5.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
- 6. 자동차안전기준의 개선 및 제·개정을 위한 연구 등 국제조화사 업
- 7. 그 밖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

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) ①	제68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 및
(생 략)	<u>운영)</u>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	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
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	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<u>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로 정한다.	
	1.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
	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
	<u>•개발 업무</u>
	2.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
	제도 및 정책의 조사・분석
	<u>업무</u>
	3.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
	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
	<u>업무</u>
	4.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
	<u>국제협력·교류 및 국외사무</u>
	<u>소 운영</u>
	5.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
	를 위한 전문가 양성
	6. 자동차안전기준의 개선 및
	제ㆍ개정을 위한 연구 등 국
	제조화 사업

	7. 그 밖의 자동차안전기준 등
	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
	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	<u>는 업무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
	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
	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
	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
	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
	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
	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